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립과학관에 대한 지원 확대〉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7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1. 공립과학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립과학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u>일부를</u> , <u>등록과학관에는</u>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 ----- ----- ----- ----- <u>일부와</u> ----- ----- ----- -----.
<신설>	② <u>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u>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u>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제17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제1호¹⁾는 과학관을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학관은 모두 제6조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즉, 현행 규정에 따르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②국·공립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현행과 동일) ②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도 가능함을 명시) 있으며, ③국립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²⁾

<개정 전/후 과학관 지원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정 후
국립과학관	- 국가가 소속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지원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운영지원	삭제
	- 국가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 (지원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운영지원	(좌동)
공립과학관	· (지원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운영지원	(지원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됨을 명시) (지원내용) 설립 및 운영지원
사립과학관	· (지원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설립 및 운영지원	(좌동)

2) 다만, 국립과학관법인의 경우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에 대한 지원 근거만 사라짐.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함으로써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에 기여하므로 그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근거가 없는 현재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공립과학관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음.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지역	지원예산(연도별)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2021~2025	전남 광양	• 2021 : 국비 10억 / 지방비 10억 • 2022 : 국비 10억 / 지방비 10억 • 2023 : 국비 5억 / 지방비 5억 • 2024(예정) : 국비 1억 / 지방비 1억 • 2025(예정) : 국비 148억 / 지방비 148억 • 총액 : 국비 174억 / 지방비 174억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2021~2025	경남 진주	• 2021 : 국비 10억 / 지방비 10억 • 2022 : 국비 10억 / 지방비 - • 2023 : 국비 - / 지방비 - • 2024(예정) : 국비 1억 / 지방비 1억 • 2025(예정) : 국비 129억 / 지방비 153억 • 총액 : 국비 150 / 지방비 16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³⁾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⁴⁾이 발의되었는데, 소위원회 논의 당시 공립과학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⁵⁾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⁶⁾나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⁷⁾와 같이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소속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과학관이므로 별도의 지원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740호,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5) 2023.1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의록 10쪽을 참고함.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7)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근거 규정은 없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